서울시, 마을센터 일방 종료…“조계사에 책임 전가?”

조계사 스님, 마을센터 직원들 삼보일배 오체투지

서울시 1년 만에 종료 일방 통보
수탁 동안 특정감사로 운영 방해
시의회 조례폐지 상정 통과 예정
30명의 직원들 일자리상실 우려
“폐지안 철회와 고용 안정”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법 쌀쌀해진 늦가을 아침, 조계사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아스팔트 위에 섰다. 이들은 죽비에 맞춰 세 걸음 걷고 오체투지를 하는 삼보일배로 서울시청을 향했다. 종각을 지나 을지로에 이르렀을 때엔 이들 얼굴과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스님과 재가자들이 삼보일배 오체투지로 서울시청을 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야기는 지난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9월 23일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조계사(주지 지현)에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마을센터)의 일방 종료를 구두 통보해 왔다. 조계사는 일방적인 종료통보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공동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 또 현재 서울마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9월 30일 공문을 통해 마을센터 운영 종료를 공식화했다.

앞서 조계사는 지난해 11월 운영 난항 중이던 마을센터를 수탁한 후, 센터 임직원들과 함께 어려운 여건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생과 호혜의 서울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왔다. 심지어 조계사가 마을센터를 수탁해 운영하는 동안 서울시는 운영권에 대해서도 침해하는 행정을 해왔다. 서울시는 조계사가 서울마을센터를 수탁한 직후, 장기간 특정감사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월별 사업비 통제, 세부 사업에 대한 실질적 간섭 및 통제 등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돌아온 것은 서울시의 일방적 운영 종료 통보였다.



조계사와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11월 22일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를 규탄하며 조계사 일주문부터 서울시청까지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조계사가 “수탁 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통보한 것은 이미 사업 폐지 계획을 세워 놓고 조계사에게 뒤처리를 떠넘긴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이유도 여기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를 입법예고했고, 오는 12월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조계사와 마을센터를 중심으로 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돼 현재 43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11월 22일 진행된 조계사 스님들과 마을센터 직원들의 삼보일배 오체투지는 부당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과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철회를 위해 진행됐다. 오체투지에는 조계사 신도국장 혜원 스님, 사회국장 정수 스님, 교육부국장 무진 스님, 이세용 종무실장, 원준혁 마을센터 전략기획팀장 등이 참여했다. 1시간 30분을 삼보일배로 이동한 스님과 재가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서한을 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조례 폐지안 철회를 비롯해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 안정을 주장했다.

조계사, 마을센터 오체투지 삼보일배 동참자들은 “사업 방법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고, 중복적인 요소가 있다면 재편할 일이다. 하지만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폐지가 결정됐다”면서 “일방적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조계사에 마을센터 직원 30명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을 폐지하려면 노동자의 고용 안정 대책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서울시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이 수탁법인인 조계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불교계와 조계사를 기만한 데에 대한 사과 요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서울시는 통상 3년인 수탁 기간을 1년 1개월로 제한한 것이 관련 사업을 폐기하겠다는 암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서울마을센터 수탁 공고문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고, 입찰시 3년 간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요구했다”며 “조계사가 수탁 이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종료 통보까지 단 한 번도 계약 종료나 사업 폐지를 언급한 적이 없다. 애초 그럴 생각이었다면 지난해 새로운 수탁법인을 공모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일련의 기만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계사는 서울시가 조례 폐지안 철회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 3차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세용 종무실장은 “불교계의 주장이 이행되지 않을 시,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담은 오체투지 삼보일배를 진행하겠다”면서 “가톨릭 성지화로 스님들의 우려와 분노가 높다. 서울시의 종교편향 정책과 일방통행적 행정에 대한 규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 “분별 끊어내야 무애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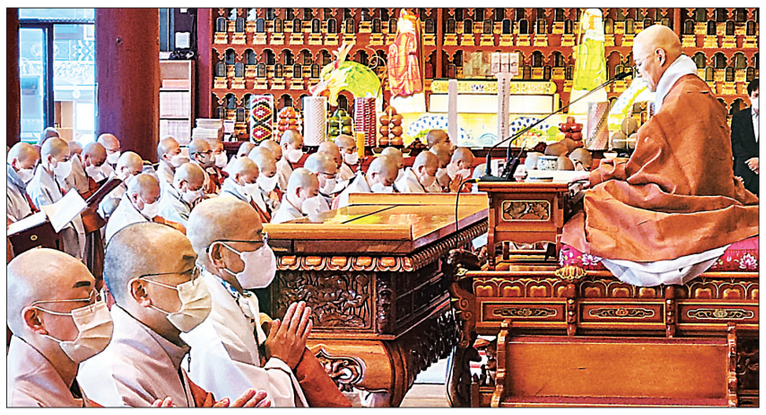
첫 동안거 포살법회 소찬법문
비구 · 비구니 280명 참여
송계 따라 스스로 돌아봐

“모든 대중들이여, 이제 보름마다 포살을 지어 보살계를 말하노니 대중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잘 듣고서 죄가 있는 이는 드러내어 참회하고 죄 없는 이는 잠자코 있으라.” 불기2566년 동안거 정진 보름을 맞은 조계사 대웅전. 장궤합장한 비구 · 비구니 스님들은 법상에 좌정한 법사의 송계에 따라 스스로를 돌아봤다.

조계종 직할교구는 11월 23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송계법사로 ‘불기2566년 동안거 1차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후 첫 송계법사로 나섰다.

포살법회 동참 스님들은 진우 스님의 송계에 따라 〈범망경보살계포살본〉를 독송하며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계를 마친 진우 스님은 대중들에게 소참법문을 설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간화선 수행을 통해 분별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신이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시비고락이며, 이를 통해 분별심이 생긴다. 이는 내가 만든 분별법이며 업식”이라면서 “이것을 없애야 성불할 수 있다”고 설했다.


11월 2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불기2566년 동안거 1차 포살법회에서 송계법사로 나선 진우 스님이 송계를 하고 있다.

이어 “업식을 끊어내기 위해 수행이 있다. 가장 수승한 수행은 참선이고 간화선”이라며 “간화선 수행을 하며 지금 이 순간을 방하착(放下著)하면 중생심을 벗어나 이고득락할 수 있다. 그 자리가 바로 도피안(到彼岸)”이라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분별을 넘어서면 무애하고 모든 행동이 계에 어긋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분별을 넘어 무애하면 저절로 보시하고, 수행하며 육바라밀이 이뤄진다. 그리하면 지켜야 할 계도 없고, 지킬 계도 없어진다. 분별을 끊어내면 우리도 무애도인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포살법회는 직할교구 소속 비구 스님 110명, 비구니 스님 170명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7기 장학위원 위촉…위원장 종호 스님

진우 스님, 11월 21일 위촉장 전달
종호 스님, 혜수 스님 등 12명 위촉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7기 장학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제7기 장학위원은 종호 스님(동국대 부총장)을 비롯해 호산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선조 스님(보문사 주지), 혜안 스님(선본사 주지), 태원 스님(도선사 주지), 승원 스님(중앙승가대 대학원장), 정덕 스님(동국대 교수), 혜수 스님(한마음선원 이사장), 법해 스님(진관사 주지), 지우 스님(교육원 교육부장 · 당연직) 등 12명이다. 7기 장학위원장은 6기에 이어 종호 스님이 선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21일 제7기 장학위원 위촉식을 열고 12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이후 진우 스님은 “장학위원회는 종단 학인 스님이 원만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하며 인재양성의 요람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인 스님들이 수행과 학업에 매진해 종단의 큰 인재가 되도록 많은 장학혜택과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대법원, ‘선암사 소송’ 조계종 상고 기각

선암사 ‘태고종 소유’ 사실상 확정

소유권을 놓고 오랜 시간 갈등 중인 순천 선암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1월 17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소송’에서 조계종 선암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을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 체험관 건물철거 소송 상고심에서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법원은 선암사를 태고종 소유로 확정한 셈이 됐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7월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와 조계종 선암사 前 주지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말소 항소심에서 前 주지에게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태고종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조계종은 11월 22일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